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-63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

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4.

발 의 자: 고 상 순 의원

### 1. 개정이유

조례 적용 대상 기관의 명칭을 ‘광진문화원’으로 명확히 하고,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반영 및 문법적 오류와 용어를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등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 변경
- 나.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)
- 다.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항목 반영(안 제9조)
- 라.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한 정비(안 제13조제1항)
- 마.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
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

(참조: 의회사무국장, 전화: 02-450-2843, 팩스: 02-454-0438,  
전자메일: kimda51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